

보조 기술 지원, 주택 개조, 차량 개조

서비스 정의

보조 기술 지원(ATS), 주택 개조(HM), 차량 개조(VM)는 장애를 가진 노인, 성인 및 아동(AD)을 위한 HSBC 면제 프로그램 또는 외상성 뇌 손상(TBI)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입니다.

- A. 보조 기술 지원(ATS)에는 참가자가 기능적 능력을 향상,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장비와 소모품이 포함됩니다.
- B. 주택 개조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에 대한 적절한 편의 제공 및 개조입니다. 이러한 개조는 개인이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, 계속해서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합니다.
- C. 차량 개조는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가족이 교통에 필요한 특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기본 자동차 또는 밴을 물리적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.

제공 조건

- A. 보조 기술 지원, 주택 개조 또는 차량 개조의 필요성은 참가자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, 참가자가 지역사회에 보다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의 건강, 복지,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 중심 계획(PCP)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B. 제공자는 참가자의 PCP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C. 보조 기술 지원 및 주택 및 차량 개조에 대한 상담, 평가, 이용 가능한 옵션 결정이 제공되며, 비용은 네브라스카 교육부 내 보조 기술 파트너십(ATP)과의 행정 계약에 의해 지원됩니다.
- D.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ATP에 의뢰합니다.
- E.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.
 - 1. 참가자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술 유형, 수정 또는 적응을 식별하기 위한 평가.
 - 2. 보조 기술 장치의 선택, 설계, 맞춤, 맞춤화, 적용, 유지, 수리, 교체.
 - 3. 보조 기술의 평가, 구매, 월 단위 임대.
 - 4. 참가자와 가족, 보호자,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교육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.
- F. 지원이나 수정은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의료적 또는 신체적 혜택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G. 최근에 구입한 주택에 직접적인 의료 또는 치료 혜택(경사로, 손잡이, 출입구 확장, 욕실 개조 등)을 적용하는 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- H. 공사 중인 주택에 계획에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 개조(롤인 샤워 등)가 필요한 경우, 표준 설비와 참가자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개조 사이의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I. 모든 품목과 보조 장비는 제조, 설계,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J. 모든 종합 건설업자는 적절한 면허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연방, 주, 지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K. 주택 개조는 해당 지역 및 주 건축법에 따라 제공됩니다.

제한

- A. HCBS 면제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주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로 제한되지만, 제도화 방지를 위한 면제 목표와 일치합니다.
- B. 보조 기술 지원, 주택 개조, 차량 개조는 제공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C. 보조 기술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1. 장기간 장비 임대,
 - 2.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의학적 또는 신체적 혜택을 주지 않는 지원, 및
 - 3. 메디케이드 주 계획에 따라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.
- D. 주택 개조 자격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1. 일반적인 유틸리티 및 집 수리,
 - 2. 표준적인 주거 의무,
 - 3. 카펫,
 - 4. 지붕 수리,
 - 5. 인도,
 - 6. 보관함과 정리함,
 - 7. 온수 욕조,
 - 8. 월풀 욕조,
 - 9. 조경,
 - 10. 새 집의 일반적인 건축 비용 또는 면제 등록 후 구입한 주택의 증축 비용,
 - 11. 주택의 출입구 개선 또는 휠체어 사용을 위한 욕실 구성 등 개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외된 주택 증축,
 - 12. 현지 건축 법규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,
 - 13. 생활 지원 아파트에 대한 적응, 및
 - 14. 시설 제공자 설정에 대한 수정.
- E. 차량 개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1. 일반적인 유용성을 위해 차량을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, 개인에게 직접적인 의료적 또는 치료적 이점이 없는 경우.
 - 2. 차량 구입 또는 리스.
 - 3. 개조한 차량의 점검과 정비에 제외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.
 - 4. 시설 제공자의 차량 개조.